***헌법* 38-1[[1]](#footnote-1)을 따라 재판 없이 소송하기로 합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 로이 테일러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장로들에게 출두하여 여러분의 범죄(들)을 알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치리회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헌법* 38-1에 따라 [앞으로] 있게 될 절차들과 여러분과 교회 치리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의도된 것입니다.

(재판을 함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소송건과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 절차의] 진행이 없는 소송건 사이의 차이점들을 주의 하십시오.

**[절차가] 진행되는 소송건과 [절차의] 진행이 없는 소송건 사이의 차이점들**

|  |  |
| --- | --- |
| **[절차가] 진행되는 소송건** | **[절차의] 진행이 없는 소송건 (*헌법* 38-1)** |
| * *헌법* 31-2 조사 결과가 범죄로 기소 할 수 있는 죄의 강한 추정 (*헌법* 29-1) | * 본인이 출두하여 “죄 고백”을 할 때 (비교. *헌법* 29-1) |
| * 전체 재판 절차들, 진행들, 증거, 검사, 변호사, 증인들의 기준들, 등의 결과로 유죄 혹은 무죄의 판결을 내린다. | * 본인이 “죄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전체 재판 절차들, 진행들, 증거, 검사, 변호사, 증인들의 기준들, 등이 없다. |
| * 유죄가 선고되면, 유죄 [선고를 받은]자는 죄의 판결과 부과된 책벌 둘 다에 대하여 상위 치리회에 상소 할 수 있고 상소를 위하여 여러 근거들을 인용 할 수 있다 (*헌법* 42-1, 2, 3과 4). | * 치리회가 판결을 내린 후에 (그것은 책벌을내린 것이다),당사자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 수 있다, *헌법* 38-1; 43-1 (그것은 자신의 죄고백에 근거하여 내린 책벌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소를 하는 것이 자신의 “죄 고백”을 취소 시키는 것은 아니다. |
| * 상소 통보는 판결을 정지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헌법* 42-6), 그것은 상위 치리회에서 상소를 해결 할 때까지 그 책벌을 [효력] 중지 [상태]로 유보해 두는 것이다. | * 상소를 접수 시켜도 치리회가 책벌을 정지 시키지 않는 한 정지되지 않는다 (*헌법* 43-4). |

*헌법* 38-1에 따라 재판 하지 않는 소송건의 절차는 *교회 헌법*, 제 2 부, “권징 조례”를 따르는 권징 절차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장로들이 여러분에게 목회적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두하여 “범죄”를 인정함으로,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해를 받게 하는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거나, 여러분이 단순히 판단을 잘 못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헌법*[[2]](#footnote-2)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죄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죄 고백을 할 의도가 있음을 교회 치리회에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헌법* 38-1의 재판 하지 않는 소송건에서 장로들은 여러분에게 책벌을가할 것인가의 여부와 무슨 책벌을내려야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들로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실 진술서
2.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죄 고백서
3. 여러분이 선택하여 교회 치리회에 제출할 수도 있는 추가 진술서

교회 치리회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당회 혹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노회) 여러분이 고백하려는 죄와 관련된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사실 진술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교회 치리회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실 진술서를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이고 여러분은 교회 치리회의 기록을 위하여 사실 진술서를 인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진술서는 여러분이 고백하려고 하는 죄에 대한 행위들, 진술들, 태도들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열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들, 사건들, 날짜들을 적절하고 적합하게 인용할 것이고, 성경구절 혹은 적용될 수 있는 인용구들을 인용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기준들* 혹은 *교회 헌법*의 부분들을 인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진술서가 정확하다는 것과 여러분이 교회 치리회가 사실 진술서를 책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라고 요청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구체적 범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진술서에 근거한 교회 치리회의 기록을 위하여 죄 고백서를 작성하도록 요청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치리회에 여러분이 죄 고백서를 작성할 의도가 있음과 교회 치리회가 여러분의 죄 고백서를 책벌을 내리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라고 요청 받게 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실 진술서와 죄 고백서에 추가하여, 여러분은 교회 치리회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추가 진술서를 교회 치리회에 제출하고 싶으면, 교회 치리회의 기록을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 치리회에 여러분의 추가 진술서를 여러분의 소송건을 재판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라고 요청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 당회들이나 노회들은 목양 위원회들 혹은 책벌이 내려져야만 할 지의 여부와 무슨 책벌을 내려야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교회 치리회에 추천 할 수 있는 [목양 위원회들과] 동등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치리회는 그런 추천을 고려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정의의 기본 원리는 책벌(들)이 범죄(들)에 적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치리회가 내릴 수 있는 책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30 장, *교회 책벌들*을 보시오). 이것들은 견책 (회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책벌), 명시된 기간 동안 직분을 [수행 할 수 없는] 유기 정직 (집사, 치리 장로, 혹 목사의 경우라면), 무기 수찬 정지,[[3]](#footnote-3) 무기 정직 (집사, 치리 장로, 혹 목사의 경우라면)과 면직 (집사, 치리 장로, 혹 목사의 경우라면), 또는 출교가 있습니다. 교회 헌법 38-1에 재판을 하지 않는 소송건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들이 나오지만, 교회 치리회는, 책벌이 필요한지와 무슨 책벌 또는 책벌들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들과 미국장로교 헌법의 범주와 일치하는 지혜와 신중함을 발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헌법* 34 장을 보시오). 어떤 점들에 있어서, 목사들은 더 높은 표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들은 더 강하게 책벌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 34-7).

여러분이 출두하여 여러분의 범죄(들)를 교회 치리회에 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송건을 결정하는 장로들은 여러분이 회개했는지의 여부와 필요한 때 적합한 배상을 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회개는 1) 죄에 대한 신실한 인정과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2)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자신에게 적용 시키는 것과 3)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즐거워 함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2). 주 예수께서 죄를 외적 행동들 이상으로 설명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마태복음 5:21-48), 교회도 죄를 마찬가지로 이해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도덕법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설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91-151).

예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8) 요구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사도행전 26:20)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나 교회가 회복 시켜주는 것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공로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야기된 손상을 우리가 고치고자 노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송건을 결정하는 장로들이 여러분이 회개했는지의 여부와 필요한 때 적합한 배상을 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입니다.

권징 절차들은 일반적으로 집행부 모임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은 만일 어떤 당회가 소송건을 주재한다고 하면, 그 당회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임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허락을 하지 않는 한, 그 특정 교회의 당회원들과 고백할 사람만 [그 모임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노회가 소송건을 주재한다고 하면, 그 노회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임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허락을 하지 않는 한, 그 특정한 노회의 회원들인 목사들과, 그 노회의 그 특정한 모임을 위하여 전권위원들로 선출받아 온 치리 장로들과, 고백할 사람만 [그 모임에] 출석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술서와 죄의 고백서가 제출된 후에, 또, 만일 무엇이든 추가 진술서가 있다면, 그것이 제출된 후에, 여러분은 그 방에서 내 보내 질 것이고, 나가 있는 동안 교회 치리회는 여러분의 소송건을 토론하여 책벌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방으로 돌아오라고 요청 받게 되고 책벌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만일 소송건이 종결된 후, 여러분에게 내려진 책벌(들)이 여러분의 범죄(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판결에 (즉, 책벌(들))에, 반대하는 이유들과 함께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38-1; *헌법* 43).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동의한 사실 진술서, 또는 여러분이 제출한 죄의 고백서, 또는 여러분이 제출 했을 수도 있는 추가 진술서를 취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책벌(들)이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소를 교회 치리회의 결정으로부터 삼십 (30) 일 내에 접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소는 책벌을 내린 교회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 시키십시오. 만일 교회 치리회가 여러분이 적법하게 접수 시킨 상소를 그 치리회의 차기 정기 모임까지 고려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상소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소를 다음의 상위 교회 치리회로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회는, 다른 일들 중에, “범과자 자신들의 영적 유익”(*헌법* 27-3)을 위하여 고심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교정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교인들 모두가 주 예수의 날에 무흠한 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헌법 27-4)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범과자의 복원입니다 (*헌법* 37 장, *해벌*). 책벌(들)을 내린 교회 치리회 장로들은, 여러분이 회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공급하신 은혜의 방편들(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성찬)을 활용함으로 영적 진보를 보이는 대로, 여러분의 소송건에 적합하다고 고려되어진 책벌(들) 중 무엇이든 해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서기 사무실은 헌법적이고 절차적인 사안들에 관하여 조언과 상담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나 서기 사무실의 직원들이 제공하는 *교회 헌법, 웨스트민스터 표준들*, “총회 운영 세칙,” “상임법사 전권위원회 운영 지침서”와/또는 *만국회의 통상법*의 해석들은 정보용일 뿐으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 치리회만이 내릴 수 있는 권위적 판결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질의자들에 대한 응답들은, 반드시 총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질의자가 공급하는 정보에 근거합니다. 서기 사무실은 교회와 관련된 법적 소송건들의 경우 어떤 쪽도 대표하지 않으며 어느 쪽을 위한 법적 소송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또는 진행 중에 있는 소송건들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헌법적이고 절차적인 지식과 이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기 사무실은 법률과 관계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들과 규정들에 익숙한 사람에게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교회헌법*38-1.** 어떤 사람이 치리회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릴 때는 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죄의 자백을 다룰 때, 당사자가 [죄를] 고백하고 치리회가 [재판] 절차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리회 앞에서 자백한 그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의 근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자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치리회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 하기 전에, 사실 일체의 진술이 피고와 치리회에 의해서 승인되어야만 한다. 피고는 판결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다. [↑](#footnote-ref-1)
2. **29-1.** 재판 절차의 정식 대상이 되는 범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원의 교리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모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은 [헌법의]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과 더불어, 신앙과 행위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표준적으로 해설한 것이라고 미국장로교는 인정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은 아무 치리회도 범죄로 인정하거나 고소할 문제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footnote-ref-2)
3. 성례나 직무의 무기 정직은 교회 치리회가 당사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가 회개하지만 [책벌을] 해제 시킬 수 없다고 생각 할 때 사용 될 수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찬을 받아서는 안된다. 유기 정직의 책벌에는 수찬 정지가 없는데, 이는 회개한 자는 성찬을 받을 수 있고, 합당하게 받았다면, 성찬은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footnote-ref-3)